

법원공보

2024. 10. 15

제 1698호



법원행정처

목차

contents

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 165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1655

예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 1686

신법령 목록

————— 1689

인사

————— 1696

규칙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63호 2024. 10. 4. 공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법 제20조의2 제1항 제16호”를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 제1항 제16호----- ----- ----- <u><신 설></u> 2. 3. (생 략)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 -----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 ----- -----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2. 3. (현행과 같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164호 2024. 10. 4.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호사건에서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피의자, 피고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으로,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행위자”로 본다.
2. 변호인: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보조

인”으로 본다.

3. 피해자: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3.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
5. 피해자의 변호사 등 대리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6. 증인
7. 통역인, 번역인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전문심리위원
10.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자
11.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의 절차관계인으로서 ‘별표 1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2. 전자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자
13.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자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

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변호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변호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제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5. 제3조제11호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관계인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변경·해임·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

용자”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5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제8조(전자서명 등) ①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이 규정한 인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제1항이 규정한 인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문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등 법원이 영장 발부 및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영장 및 이에 준하는 서류와 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3. 그 밖에 법원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등 소송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법원

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그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변환·등재한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변환한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로 전원이 전자서명(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로 전원의 전자서명(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제5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④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⑥ 제5조제1항제2호의 법인회원으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별로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지 아니할 것

2.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거임을 명시할 것

3.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할 것(단, 전자화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 제한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전자문서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재판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전자문서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문, 제5항에 따라 특정된 정보는 당해 전자문서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다음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법원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송부 또는 송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①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보저장매체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정보저장매체등을 제출하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2.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 ③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 ④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전자문서화)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방법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등재한 전자화대상문서는 제출한 자가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고, 해당 형사사법절차 확정 후 제출한 자의 의사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자화대상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 등(다음부터 “서류등”이라 한다)을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반복하여 다량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재판장등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또는 법원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속성 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자화프로그램 등 시스템 정보
2. 전자화문서 생성일시
3. 파일 형식, 문서 장수, 문서 크기 등 페이지 정보
4. 무결성 검증정보

제16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문서는 그 전자화대상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 제출한 전자문서는 그렇지 않은 전자문서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가 접수되거나 전자화문서가 등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일시
3.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제28조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록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의 화면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 제출일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제출 후 최초로 진행되는 기일이 끝날 때까지 제1항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④ 제출한 전자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한 등록사용자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전자문서의 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삭제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다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① 재판장등은 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이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전자문서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정정
 -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폐기) ①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 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②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전자적 유통, 송달 및 통지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때에는 전자기록에 이송 또는 송치에 관한 결정문 등을 등재하고, 이를 포함하여 송부할 서면을 출력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심급 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군

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법절차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2.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형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인 경우, 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그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2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4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전산등재 및 그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
2. 법 제14조제1항제3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다만, 문자전송서비스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효력이 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의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송달·통지의 대상인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 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신된 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4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더라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2. 피고인이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때

④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보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보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보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게 되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력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출력문서에는 출력하는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 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한다.

1. 출력자 정보
2. 출력일시
3. 출력프로그램 등 시스템 정보

④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적 열람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을 열람·등사 또는 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 또는 서면으로 출력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정보저장매체등에 내려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내려받거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해당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한다.

1. 열람·등사·복사하는 자의 정보
2. 열람·등사·복사 일시
3. 발급번호

④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필요성, 이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자별로 열람·등사·복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열람·등사·복사 대상 기록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형사사법절차가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28조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공판과 증거조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① 공소장,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진술 또는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되, 증거임을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진술하는 방법
3. 전자문서가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2. 전자문서가 음성·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자 및 그 일시·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④ 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증거로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를 취득한 시기 및 방법 등 증거취득의 경위에 관한 정보
2. 압수수색영장 등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득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재판장등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목록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것을 명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문자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작성자, 작성일, 출력한 자와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제33조(음성·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음성·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제34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설명) ①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 등을 신문할 수 있다.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71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 규칙 제33조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8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 ① 제3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장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36조(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다음부터 “영장등”이라 한다)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1.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0조의2,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체포영장
2. 「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 「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에 따른 구인장, 유치허가장
6. 「소년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에 따른 동행영장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8. 「형사소송법」 제113조 및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1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서

② 전자문서로 발부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장등이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장등을 전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전송은 그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그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영장등을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그 신원이 확인된 자

③ 제2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장등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암호화 조치를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용 프로그램 내에서 제16조 제4항제3호의 정보가 동일한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전용 프로그램에는 원본 형태의 출력을 방지하고 집행 완료 이후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영장등이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달리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피집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피집행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④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하는 경우, 발부한 영장등의 수와 그 사유에 관한 정보를 각 전자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은 이를 집행하는 때에 당해 영장등이 법관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부되어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생성한 바코드 등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의 형태로 확인·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3항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해 영장등의 유효성을 전자적으로 확인·검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영장등을 집행할 때마다 전자문서의 제시 또는 전송 등 전자적 집행에 관한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력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영장등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자문서로 발부되는 영장등과 별도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로 영장등을 발부하는 경우에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8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영장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집행하는 때에 「형사소송규칙」 제49조에 따른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영장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집행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전자문서로 발부되는 영장등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을 유지하여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당해 영장등과 분리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출력은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당해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한 경우에는 출력횟수도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이후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시나 전송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은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되, 영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을 전자화하여 원래의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반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장등의 출력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집행하는 경우의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및 제4항(같은 법 제200조의6, 제20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18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장등의 사본 교부는 전자문서의 사본을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의 사본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송은 제36조제2항에 의한 방법 외에 당해 영장등의 사본임을 표시한 교부용 전자파일을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에 따른 압수목록,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년심판규칙」 제21조, 제3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52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37조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40조(전자문서의 이용·관리)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다음부터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기록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등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전자문서 보관·폐기에 관한 특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위 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공소제기된 사건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5.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심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사건
 6. 당해 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에 따른 송부 요구, 「민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352조에 따른 송부 촉탁이 있는 사건
 7.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 관련 사건의 수사나 심리를 위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건
- ② 법과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전자기록의 보존, 폐기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법 제3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절차별 적용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이 규칙은 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에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이 법 시행 전 절차에 따른다.

1.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재심·비상상고·상소권회복·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사건
2.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속 중인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별표 4의 신청사건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 법 적용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서, 공판조서 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병합 사건의 특례) ① 병합 사건 중 일부가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병합 이후부터는 그 전부를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건기록에 포함된 전자화대상문서는 제15조에 따라 전자문서화한다. 다만, 재판장은 전자화대상문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화하지 아니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전자문서로 발부된 이 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장등을 법 제17조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과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5조(다른 규칙의 폐지 등) 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그 대상 사건에 관한 약식절차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때에 폐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폐지 전에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지 이전에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폐지 전에 진행된 절차는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

제6조(일부 조항의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송치·송부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송치하는 사건의 수사기록, 증거기록에 관하여는 2026년 9월 27일까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화하지 아니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법 제14조, 이 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27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출력 문서의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 부칙 제2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출력하는 재판서·조서의 등본, 초본 등 법원 작성 문서를 이 규칙 제27조제4항의 방식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별표 1]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제3조제11호 관련)

구분	절차관계인	근거 법령
소년보호 사건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장	「소년법」 제4조제3항
	진단전문가	「소년법」 제12조
	위탁보호위원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수탁기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
	화해권고위원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
가정보호 사건	진단전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
	임시조치 수탁기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6호
	수탁기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아동보호 사건	임시조치 수탁기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 제36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7항, 제23조, 제36조제4항
	피해아동등의 임시후견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6조제4항
	수탁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진단전문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성매매 관련보호 사건	
	수탁기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제5호

[별표 2]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구분	비용산정방법
기록의 열람·출력	1건마다 500원(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한 뒤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기록의 출력서면 교부	출력서면 1장마다 50원(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록의 복제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3]

절차별 적용시기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25. 6. 9.	「형사소송법」	형사공판사건, 약식절차사건, 영장 청구사건, 형사신청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의 모든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의 모든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모든 사건
	「소년법」	모든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장의 모든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건,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사건,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사건
2025. 10.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모든 사건

[별표 4]

본안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사건유형	사건부호
형사준항고 사건	보
체포구속 적부심 사건	초적
보석사건	초보
재정신청 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재
기타형사신청사건 (「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 등 본안사건 확정 이후에 제기된 것을 제외한다)	초기

[별표 5]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적용일	집행대상인 영장등	방법
2025. 6. 9.	제36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발부된 모든 영장등	법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당해 전자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는 방법
2025. 10. 10.	제36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발부된 모든 영장등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전자영장을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
2026. 9. 28.	제36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영장등	법 제17조제1항, 이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장등을 전송하여 집행하는 방법

예규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05호 2024. 10. 4.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5조의3(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신법령 목록

(2024. 9. 16.~2024. 9. 30.)

법률

법률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20837	2024. 09. 20	5
법률제2043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043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20436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043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	31
법률제20439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34
법률제20441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204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2044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20444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20445호	간호법	"	"	41
법률제2044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	"	57
법률제20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20448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2044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	60
법률제20450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62
법률제2045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63
법률제2045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4
법률제2045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5
법률제2045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6
법률제2045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2046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8
법률제2046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0840	2024. 09. 25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489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36	2024. 09. 19	4
대통령령제34891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4892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4893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4894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34895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4896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489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4898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3489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37	2024. 09. 20	69
대통령령제3490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34901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34902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8
대통령령제3490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4904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1
대통령령제34905호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34906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841	2024. 09. 26	4
대통령령제34907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4908호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9
대통령령제3490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491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491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491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4913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49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3491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34916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4917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4918호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32
대통령령제34919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34920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4921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43
대통령령제3492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3492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4924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43	2024. 09. 30	5

총리령

총리령제1981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836	2024. 09. 19	32
총리령제198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37	2024. 09. 20	83
총리령제1983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41	2024. 09. 26	51
총리령제198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
총리령제198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취소	20841	2024. 09. 26	(별권) 2

부령

행정안전부령제515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20836	2024. 09. 19	36
국토교통부령제138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837	2024. 09. 20	84
국토교통부령제138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9
국토교통부령제138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6
행정안전부령제5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0
환경부령제1119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1
고용노동부령제42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38	2024. 09. 23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68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여성가족부령제207호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외교부령제137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20839	2024. 09. 24	3
고용노동부령제4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41	2024. 09. 26	56
국토교통부령제1390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	"	57
기획재정부령제108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0
기획재정부령제10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3
기획재정부령제108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5
농림축산식품부령제68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

농림축산식품부령제68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3
법무부령제108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7
보건복지부령제1056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	78
보건복지부령제10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2
외교부령제13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8
중소벤처기업부령제9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9
해양수산부령제693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5
해양수산부령제69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6
행정안전부령제51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9
환경부령제1120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	"	106
국토교통부령제139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42	2024. 09. 27	4
기획재정부령제586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	6
보건복지부령제105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여성가족부령제209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외교부령제139호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	"	25

해양수산부령제695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행정안전부령제518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0
국토교통부령제138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0843	2024. 09. 30	7
국토교통부령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8
국토교통부령제139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보건복지부령제1059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여성가족부령제20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행정안전부령제519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9

인사

인사발령 법 제153호

2024. 8. 3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순현	2024년도 특정 주제 세미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2024. 9. 6.) 피교육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한미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순영	"	
"	진원두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	
"	이재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정수경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현석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지숙	2024년도 특정 주제 세미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2024. 9. 6.) 피교육을 명함
	"	이미나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성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소민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남신향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문경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서아람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병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백주연	"
	"	서정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강동원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도식	2024년도 특정 주제 세미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2024. 9. 6.)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남준우	2024년도 특정 주제 세미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2024. 9. 6.) 피교육을 명함
	"	김두홍	"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2024년도 특정 주제 세미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2024. 9. 6.) 피교육을 명함
	"	김아름	"
	"	오형석	"
	"	최파라	"
	"	한나라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현민	"
	인천지방법원 판사	여한울	"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현기	"
	"	이보라	"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현섭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진경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성재준	2024년도 특정 주제 세미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2024. 9. 6.) 피교육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한지숙	"

끝.

인사발령 법 제154호

2024. 9. 1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2024. 9. 23.부터 2024. 9.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경력별연수 IV-2) 피교육을 명함
	"	이세라	"
	"	조형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규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찬영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완수	"
	"	김현정	"
	"	박주영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효영	2024. 9. 23.부터 2024. 9.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경력별연수 IV-2) 피교육을 명함
	"	정우석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대규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부영	"
	"	김성수	"
	"	김지후	"
	"	송종선	"
	"	위지현	"
	"	이상덕	"
	"	장민석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재향	"
	"	박효선	"
	"	송호철	"
	"	여현주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맹준영	"
	"	송백현	"
	"	유재광	"
	"	이영남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2024. 9. 23.부터 2024. 9.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경력별연수 IV-2) 피교육을 명함
	"	진현지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장진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대현	"
	"	채대원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하상익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우근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준범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순향	"
	"	박진숙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정한근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은영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오규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유희선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수	"
	"	정영하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태준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현미	2024. 9. 23.부터 2024. 9.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경력별연수 IV-2) 피교육을 명함
	"	방선옥	"
	"	오창훈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태희	2024. 9. 23.부터 2024. 9.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경력별연수 IV-2) 피교육을 명함
	"	김경애	"
	"	이은혜	"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의석	"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은영	"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희영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광국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	"
	"	이의영	"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은주	"
	"	장지용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2024. 9. 23.부터 2024. 9.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경력별연수 IV-2) 피교육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55호 2024. 9.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재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9. 23.부터 202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56호 2024. 9.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 법 원	김복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4. 9. 21.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7호

2024. 9.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숙희	2024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4. 9. 30.) 피교육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미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진영현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덕식	"
	"	이명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현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송병훈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세영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남신향	"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병민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금진	2024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4. 9. 30.) 피교육을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연주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배구민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2024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4. 9. 30.)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남준우	2024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4. 9. 30.) 피교육을 명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2024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4. 9. 30.) 피교육을 명함
	"	박근규	"
	"	박종현	"
	"	이서윤	"
	"	최건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종찬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청주지방법원 판사	강현호	2024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024. 9. 30.) 피교육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58호

2024. 9.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선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17.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지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13.부터 2025. 7. 27.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22.부터 2025. 1. 2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수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2.부터 2025. 10. 1.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14.부터 202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화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7.부터 2024. 12. 31.까지 휴직을 명함
	"	유영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7.부터 2025. 3. 7.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명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8.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가정법원 판사	박혜민	2024. 10. 11.부터 2025. 10. 1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봉조	복직을 명함. 1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4. 10. 4.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4.부터 2025. 8. 1.까지 휴직을 명함
-------------------------	-----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배윤경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4. 10. 1. 자)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산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10. 7.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10. 12. 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혜원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10. 16.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16.부터 2026. 2. 27.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10. 5.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윤준석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2024. 10. 19.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19.부터 2025. 2. 18.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섣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10. 1. 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재인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포함 (2024. 10. 1. 자)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1.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포함 (2024. 10. 17.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0. 17.부터 2025. 7.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사발령 법 제159호

2024. 9.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17호봉을 급함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이현우	16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남해광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하정	1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채대원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춘순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민규남	1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문식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수	13호봉을 급함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윤현규	12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지혜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유현정	11호봉을 급함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연수	"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우석	11호봉을 급함
	"	김신영	10호봉을 급함
라.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무룡	8호봉을 급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	김재호	"
	"	박경모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인영	"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유진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영선	"
	"	김창용	"
	"	이병탁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미혜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병훈	11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종현	"
	대전지방법원 판사	고영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지현	10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박성경	"
	부산지방법원 판사	한혜진	"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혜정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金志燮)	8호봉을 급함
	"	안성민	"
	"	윤혜원	"
	"	이재욱	"
	"	이지영	"
	"	이창환	"
	"	현정현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민식	"
	"	노재승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성열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철만	"
	"	김주완	"
	"	문지용	"
	"	윤상일	"
	"	조민식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덕수	"
	"	남승정	"
	"	석윤민	"
	"	여규호	"
	"	하승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준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영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강희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정예지	"
	인천지방법원 판사	권비룡	"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성대	"
	"	박은지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해인	8호봉을 급함
	"	유인한	"
	"	정요진	"
	수원회생법원 판사	배준익	"
	"	정수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순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정영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환권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정기종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재민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
	"	최승호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강명중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여동근	"
	대전지방법원 판사	나광윤	"
	"	이정덕	"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민주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김다슬	"
	"	송인석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대인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국제형사재판소(ICC))	박진욱	8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박종원	"
	"	서영민	"
	"	최지현	"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중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
	"	신재호	"
	"	황용남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
	부산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
	"	전유상	"
	부산지방법원 판사	허성민	"
	부산회생법원 판사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도민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
	울산지방법원 판사	한윤영	"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태호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진원	8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구준모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인범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고석범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디모테	"
	"	이원식	"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제석	7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은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하나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민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주미소	"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은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진경	5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선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송이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
	"	정명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채영립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화현	5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나영	"

(2024. 10. 1.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60호

2024. 9.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	2024. 10. 7.부터 2024. 10. 2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윤승은	2024. 10. 16.부터 2024. 11. 1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2024. 10. 28.부터 2024. 11. 2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기창	2024. 10. 14.부터 2024. 11. 1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이영광	2024. 10. 28.부터 2024. 11.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2024. 10. 1.부터 2024. 10.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성수	2024. 10. 20.부터 2024. 11. 1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송경호	2024. 10. 8.부터 2024. 10. 2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양준	2024. 10. 2.부터 2024. 10.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률	2024. 10. 28.부터 2024. 11. 2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현	2024. 10. 21.부터 2024. 11.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관용	2024. 10. 7.부터 2024. 11. 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세종	2024. 10. 28.부터 2024. 11.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송혜정	"
	"	조찬영	2024. 10. 14.부터 2024. 11. 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2024. 10. 17.부터 2024. 11. 1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61호 2024. 9.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함철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명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4. 10. 8. 자) 끝.



법원행정처

SUPREME COURT OF KOREA

2024. 10. 15. VOL. 1698



ISSN 2951-2255